

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-1496호

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(3차)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496호(2008.01.07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91호(2024.08.08.) 등으로 재정비촉진구역 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23-21호(2023.02.1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24-45호(2024.04.0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서 등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및 사업시행자(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)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,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4년 11월 21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가. 열람기간 : 2024. 11. 21. ~ 2024. 12. 5.(14일 이상)

나. 열람서류 :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

다. 열람장소 :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,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
사업 조합

라. 수용재결신청 내역

- 1) 사 업 명: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재결신청자: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- 3) 사업위치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86-1번지 일대
- 4) 재결신청내용: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
- 5) 수용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 내용
 - 토지 및 물건: 이문동 86-1번지 일대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내
- 6) 관계서류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마.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상세내역 : 생략(비치된 관계서류 참고)

바. 열람 편의를 위하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
(☎02-2127-4939) 및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
(☎02-2246-2595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